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00
------------	-------

발의연월일 : 2018. 6. 7.

발 의 자 : 김현아 · 이종구 · 황영철

송기현 · 이철규 · 박덕흠

문진국 · 추경호 · 경대수

이종명 · 박인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요구하고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대금이 미지급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99조제3호의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를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죄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죄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③ <u>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u></p> <p>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 13. (생략)</p>	<p>----- ----- -----. ----- ----- ----- ----- ----- -----. ③ <u>제2항에 따라</u> ----- ----- ----- ----- ----- ----- ----- ----- ----- -----. 제99조(과태료)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u> <u>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u> <u>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u> <u>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u> <u>아니한 자</u> 4. ~ 13. (현행과 같음)</p>
---	--